

분류기호 문서번호	인위 01110 7-2	<b>기안용지</b> (582 - 4106)		시행상 특별취급
보존기간	영구.준영구. 10.5.3.1.	위 원 장		
수신처 보존기간	5년	1017		
시행일자	1991. 4.	6월 6일 1991. 4. 8		
보조 기관	교육원장	합	법무담당관 심사필	1991. 4. 08 문서통제 1991. 4. 08
	내무국장	조	인사과장 기획과장	
	교수부장	기	인사기획계장 정리계장	
기안책임자	이규섭	관	(91. 4. 권오봉)	발송인
경유 수신 참조	각안참조	발 신 명 의	위 원 장	추산필 K/3
제 목	1991년도 서울특별시 별정직지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제1안)				
수 신 :	내부결재			
	1. 인사 01110 - 609 (91. 4. 3 ) 호와 관련입니다.			
	2. 1991년도 서울특별시 별정직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을 별첨과같이			
	시행하고 공고 "안" 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별첨과같이 시행하고 공고 "안" 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시험실시 계획 : 별첨계획(안)참조			
	나. 공 고 내 용 : 별첨공고(안)참조			
	다. 공 고 방 법			
	공고일자 : 1991. 4. 9 (화)			
	게재신문 : 1 개 일간지			
	게재규모 : 5 단 23cm			

소요예산 : 3,339,600 원
( 26,400 × 5단 × 23cm x1.1 )
예산과목 : 교육, 공무원교육원, 시험관리, 수용비및수수료
지출방법 : 신문광고후 청구에의거 직불
첨 부 : 1) 시험실시계획(안) 1 부
2) 공 고 (안) 1 부 끝.
(제2안)
수 신 : 서울특별시
참 조 : 인사과장
제 목 : 갑 음
1. 인사 01110 - 609 (91. 4. 3 ) 호와 관련입니다.
2. 1991년도 서울특별시 별정직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을 별첨과같이
별첨과같이 시행하니 홍보및 시험관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공고문 사본 1 부, 끝
(제3안)
수 신 : 서울특별시
참 조 : 공보관
제 목 : 신문광고및 시보계재 의뢰
1. 1991년도 서울특별시 별정직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실시코자
공고문을 송부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문광고
1) 게재신문 : 1 개 일간지
2) 광고일자 : 91. 4. 9 (화)
3) 게재규모 : 5 단 23cm
나. 시보계재 : 최단기간내 게재



첨 부 : 1) 공 고 안 4 부
2) 보도자료 35 부
(제4안)
수 신 : 서울시 성북구 월곡동 39 - 1 한국과학기술 연구원장
참 조 : 시스템공학센터소장
제 목 : 91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채용필기시험 채점외피
1.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채용필기시험 답안지에 대한 전산 채점을 의뢰합니다.
가. 수 량 : 응시원서 접수후 통보
나. 처리요구 자료
(1) 응시번호순 채점표
(2) 성적순위 별 채점표
(3) 응시번호순 합격자 명단
(4)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용 명단
(5) 최종합격자 명단 (응시번호순, 성적순)
(6) 통 계 표
다. 선발예정 인원 및 가산 특전 : 공고문 사본 첨부
라. 시험시행요령, 합격자 결정 요령 : 별지 참조
첨부 : 1) 공고문 사본 1 부, 2) 시험시행요령 1 부, 합격자 결정 요령 1 부
3) 통계표 양식 1 부 끝

결 제  
1991. 4. 26

12-3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의결서

1. 발의일시 : 1991. 4.
2. 안 건 : 서울특별시 별정직 지방공무원시험 계획 결정
3.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별정직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을  
별첨 계획과 같이 시행키로 의결함
4. 기 타 : 회의록은 계획안으로 대응키로하고, 그 작성을 생략함

1991. 4.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백상승

위원 김재량

위원 강덕기

위원 신성호

위원 김성순

위원 박형

위원 김학재

위원 김창

간사 이규철



12-4

187

사회 복지 전문요원 ( 별정직 7급 ) 채용시험 시행 계획

1. 선발예정 인원 및 응시 자격

직 업	직 급	선발예정인원	응시 연령	거 주 지	응시자격	기 타
별 정 직 (사회복지전문요원)	7급상당	230명	91. 5.24 기준 만22세--만40세	제한없음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지방공무원법제31 조 외결격사유가 없고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 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않은자 . 현역군인 (방위소집감동 포함)인 경우 최종시험일 (면접기준일)기준으로 6개월이내에전역될자

2. 모 집 방 법

- 지방 공무원법 제27조 제2항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sup>2019. 9. 09</sup> 재한경정 특별채용 시험으로함

3. 시 험 과 목

- 필 수 ( 3 과목 ) : 국사 , 국민윤리 , 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론 포함)

4. 시 험 방 법

1 차 시 험	2 차 시 험
선답형 필기시험	면 접 시 험

- 진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자는 다음단계의 시험에 응시할수 없음
- 필기시험 합격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자는 면접 시험에 응시할수 없음
- 신체검사 실시명원 , 서류제출 기간등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함

12-5



5. 응시 원서 접수 및 시험 시행 일정

구 분	기 간	장 소	합 격 자 발 표
응시원서 교부 및 접 수	91. 4. 17(수) - 91. 4. 19(금)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 (서초구서초동산36번지)	_____
필 기 시 험	91. 5. 4 ( 토 )	91.4.16(금) 1개입간지및 공무원교육원계시	91. 5. 14(화) 1개입간지및공무원교육원계시
면 접 시 험	91. 5. 24(금)	서울특별시 공무원 교육원 (서초구서초동산36번지_)	91. 5. 31 (금) 1개입간지 및 서울시 공무원 교육원 계시

6. 응시 원서 접수시 지참 및구비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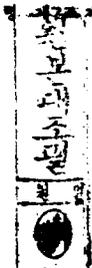
- 응시원서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용지 )----- 1 부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 초본-----1 부
- 응시자격 증명 서류 ( 해당 자격증 사본 )-----1 부
- 사 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 탑보 상반신 반명함판 )-----3매
- 인 장
- 응시 수수료( 1,000원 상당의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

\* 우편에 의한 응시원서는 접수하지 않음

7. 시험 시행 요령

가. 필 기 시 험

- . 시험과목 :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임용 시험령 제2조제1항"필포"에  
의한 일반 행정 직류에 준하되 3과목으로 축소, 변경 조정 시행



- . 문제수 : 과목당 20문
- . 시험시간 : 1문당 1분 기준
- . 문제형 : 객관식 선택형 : ( 5문중 택일식 )
- . 배점 : 예문당 5 점 , 과목당 100점 만점
- . 출제 수준 :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47조 의 규정에 의함
- . 채 점 : KIST 에 채점 용역(O.M.R 채점 )

나 . 면 검 시 험

- . 서울 특별시 인사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함

B . 합격자 결정

가 . 필 기 시 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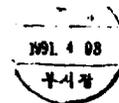
- . 매과목 4환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환이상 득점한자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130%범위 이내인 240명을 전과목 총득점 (가산득점포함 )에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 그 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함

나 . 면 검 시 험

- . 두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 (10점 ) 이상인자등 합격자로 함
- 단, 두위원이 평점 요소중에서 동일한 평점 요소에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다 . 최종 합격자

- . 면접 시험에 합격한자등 최종 합격자로 하되 제한사유 해당자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자는 필기시험과 면접 시험 합격에 불구하고 이시험에서 불합격으로 함



12-9

9.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권

가. 국가 유공자 : "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는 필기시험  
 각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10%를 각각 가산함 ( 취업보호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 보존처에서 사진에 확인 하여야함 )

나. 제대 군인 : " 국가 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 제대군인중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된자는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5%를 , 2년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된자 ( 방위소집이 해제된자등)에게  
 는 만점의 3%를 각각 가산함 ( 단, 복대보증역, 복수전문요원 등은 제외 )

다. 자격증 소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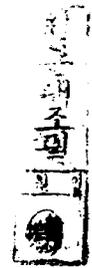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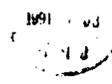
1) 주 산 , 타 자 자격증

" 국가 기술 자격법" 에 의한 주 산 , 타 자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각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1.5%까지 다음표에 의한 점수를 가산함  
 ( 이경우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것 하나만을 가산함 )

구 분	가산비율(%)	1. 5	1. 0	0. 5	인정하는 자격증
주 산		1 급 이상	2 - 3 급	4 - 5 급	대한상공회의소에서발행한 자격증  (다만,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에서 기발행한 자격증도인정되나, 조외 의 기관및 단체에서 자격증을 취득 한자는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자격 증을 갱신또는 재교부 받아 제출하여 야함
타 자		1 급	2급	3 - 4급	

\* 위 "가" 항과 "나"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것 하나만을 "가"또는 "나"항과"다"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두가지 가산점을 합산하며 "다"항의 경우에는 과목별 4항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12-8



10. 행정 사항

. 모집 공고 : 1 개 일간지

. 모집 공고문 시보 게재 : 산하 권기관 배포 (공보관)

. 홍보매체 활용 : TV, 라디오, 신문 등 보도자료 제공 (공보관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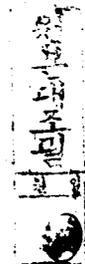
11. 공 고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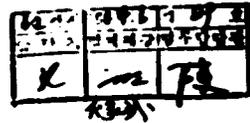
--- 별첨 ---

12. 보 도 자 료

--- 별첨 ---

2-9





공 고 ( 안 )

서울특별시 공고 제 95호

1999년 도 서울특별시 별정직 지방 공무원 채용시험 시행 계획 공고

1999년도 별정직 지방공무원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년 4월 8일

서울특별시 장

1. 선발 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구 분	직 렬	직 급	선발예정인원	응시연령	거주지	응 시 자 격	기
별 정 직	사회복지 전문요원	7급 상당	230명	91년5월 <sup>24</sup> 일 기준 만22세-만40세	제한없음	사회복지사 3급이상 자격증소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자</li> <li>현역군인(방위소집자 등포함)인경우 최종시험일(면접기준일)기준으로6개월이내에전역 될자</li> </ul>

2. 시험 방법

구 분 \ 시험 단계	제 1 차 시 험	제 2 차 시 험
별정직	선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 진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수 없음
- 1차시험 합격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하며 이에 불합격판정을 받은자는 면접 시험에 응시할수 없음
- 신체검사 실시병원, 서류 제출기간등은 1차시험(합격자 발표시) 공고함



3. 필기시험 과목 : <sup>3과목</sup>필수(3) - 국사, 국문윤리, 사회복지론 (사회보장정책론포함)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 시행 일정

직종	구분	기간	장소	합격자 발표
별정직	응시원서교부및 접수	91년4월17일(수)- 91년4월19일(금)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 (서초구서초동산36번지)	—————
	필기시험	91년 5월4일 (토)	91년4월26일(금) 1개일간지및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91년 5월 14일 (화) 1개일간지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교육원
	면접시험	91년 5월24일(금)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 (서초구서초동산36번지)	91년5월31일(금) 1개일간지및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게시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교봉편 - 지하집 : 3호선남부터미널역하차

- 버스 : 288(직석)번,88-1번,136번, 좌석42번 공무원교육원앞하차

5. 응시원서 접수시 지참 및 구비 서류

- 응시원서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 용지 ) -----1봉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 초본 ( 병적사항 기재분 ) -----1봉
- 응시자격 증명서류 ( 해당 자격증 사본 )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 -----3매
- 인 장
- 응시 수수료 ( 1,000원 상당의 서울특별시 수입 증지 )

\* 우편에 의한 응시원서는 접수하지 않음



12- //

6. 필기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권

가. 국가유공자 : "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 제 29조에 의한 위업보조 대상자는 필기시험  
 각과목별 득점에 반점의 10%를 각각 가산 함 ( 위업보조대상자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진에 확인하여야 함 )

나. 제대 군인 : "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 제 70조 규정에 의하여 , 제대군인중 2 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된자는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반점의 5%를  
 각각 가산함 ( 단 , 부대보충역, 복수전분 요원들은 제외 )

다. 자격증 소지자

1. 주 산, 타자 자격증

" 국가 기술 자격법 " 에 주산, 타자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각과목별 득점에 반점의  
 1.5% 까지 다음표에 의한 점수를 가산함  
 ( 이 경우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

구 분 \ 가산비율(%)	1.5	1.0	0.5	인 정 하는 자 격 증
주 산	1급 이상	2 - 3 급	4 - 5 급	.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자격증 (다만,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에서 발행한 자격증도 인정되나, 그 이외의 기관 및 단 에서 자격증을 취득한자는 대한상공회의 에서 자격증을 갱신 또는 재교부 받아 제출 하여야함
타 자	1급이상	2급	3 - 4 급	

\* 위 " 가"항과"나"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 가 " 또는 "나"항과, "다"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두가지 가산점을 합산하며 "다"항의 경우에는 과목별 4점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의망자는 자격요건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시키기 바랍니다

나. 필기시험 응시자는 시험 시작 40분 전까지 주 민등록증, 응시표, 필기도구(컴퓨터용흑색수성펜인펜) 를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표를 분실한자는 시험일시 3일전까지 서울특별시 공무원 교육원전행실에서 재교부 받아야 시험에  
 응시할수 있습니다

마. 기타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교육원 전행실 ( 582-4106 ) 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